

3. 박람회 참가규정

제1조 |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해 소정의 참가신청계약을 제출한 개인, 회사, 기관 및 단체 등의 전시참가자를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K-BEAUTY EXPO KOREA 2019(제11회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경기도를 말하고, 「주관자」라 함은 KINTEX를 말한다.

제2조 | 참가신청 및 계약

1.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계약을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참가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 부스비는 독립부스 2,200,000원/1부스, 조립부스 2,500,000원/1부스이다.(부가가치세 별도)
3. 부대시설 및 기본부스 장치공사는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주관자가 제공하며, 참가신청계약서 및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4.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 | 전시부스 배정

1. 주관자는 전시품 성격, 참가신청 순서, 참가횟수 및 참가비 납입 순서 등에 따라 전시자의 전시부스 위치를 배정한다.
2. 주관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시자에게 기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계약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관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사전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전시장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시자는 사전에 주관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고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관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7.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 복구 등 주최(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을 전시사무국으로 제출하거나 전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가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단 2019년 7월 31일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 완납하여야 한다.
3. 전시자가 참가비 전액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 약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었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참가취소 및 위약금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를 축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변경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납입된 참가비는 동해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 2019년 7월 12일 이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19년 7월 13일 이후 ~ 2019년 8월 16일 이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 2019년 8월 17일 이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자에게 납부
2. 위약금은 부가세 불포함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 |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8시까지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사용 신청 및 시간 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킨텍스 전시 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 방화 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 보충 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킨텍스 전시장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 분쟁 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관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